

의안번호	2208343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5. 4. 1.
추 계 번호	25B1022

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억 8,000만원(연평균 1억 9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항만안전기본계획 (안 제4조의2)	260	-	-	-	-	260	52
항만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(안 제11조의2)	144	144	144	144	144	720	144
합계	404	144	144	144	144	980	196

주: 1.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	국가는 항만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~~여~~야 함(제1항) ※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국가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항만에서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하~~여~~야 하고, 이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국가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※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개정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4조의2(항만 안전기본계획 등 수립·시행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제1항)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항만안전에 관한 중·장기 종합정책방향 2. 항만안전사고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3. 항만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. 항만안전지식의 보급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. 항만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항만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만안전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11조의2(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) 신설	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,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·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	—	·미대상 — 항만운송 참여자 및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 규정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직접적으로 특정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 없음
2	안 제4조의2(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·시행) 신설	○	·유사사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
3	안 제11조의2(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) 신설	○	·유사사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,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기간 중 첫째 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항만안전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, 항만시설의 유지·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 중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·시행(안 제4조의2 신설)
 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안전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 기간 중 첫째 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항만안전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 -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6,000만원(연평균 5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안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소관 부처	기간	계약액
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	행정안전부	2021.5.~2021.11.	190
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수립 용역	해양수산부	2021.3.~2021.12.	200
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	국토교통부	2021.4.~2022.5.	391
평균			260

자료: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 (2025.3.31. 검색)

[표 3] 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·시행 관련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항만안전기본계획	260	-	-	-	-	260	52

주: 1.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(안 제11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만안전사고 유형과 발생현황, 항만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내용 및 항만시설의 유지·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,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억 2,000만원(연평균 1억 4,400만원)으로 추계됨
 - 행정안전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실시방안 연구용역(2023.5.~2023.12.) 1억 4,400만원 집행

[표 4] 향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관련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향만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	144	144	144	144	144	720	144

주: 1.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실태조사 용역 실시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정부 부처의 안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용역 실시 내용 및 방식 등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